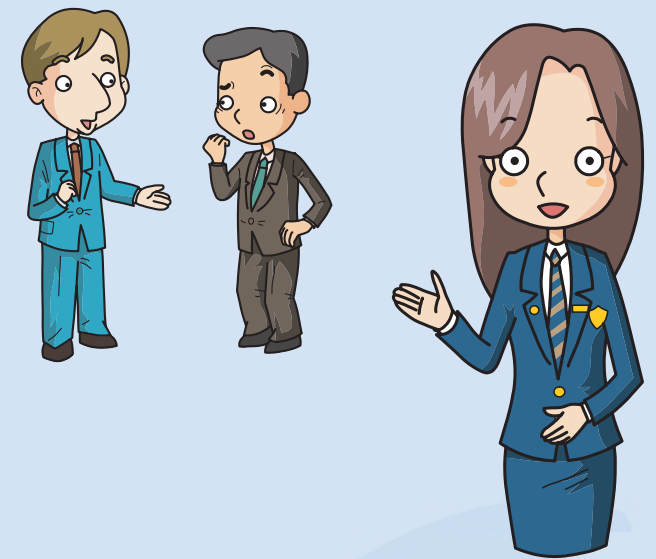




한 · EFTA FTA

이런 것은 꼭 알아두세요!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2동 920번지  
정부 대전청사 1동(3~7층)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http://www.customs.go.kr>



# 이런 것은 꼭 알아두세요!

## CONTENTS

I. 이런 원산지증명서는 처음 봐요!.....	4
■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서식이 똑같아요?	
■ 왜 송품장을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사용하죠?	
■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만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되나요?	
■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서류 제출하는 경우 송품장과 원산지증명서 모두 제출하나요?	
■ 모든 물품에 간이 원산지증명서가 적용되나요?	
II.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어요! ...	10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란 무엇인가요?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서류제출 대상이 아닌가요?	
■ 통관단계의 경정절차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어떻게 하죠?	
III. 협정관세 적용오류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6
■ 협정관세 신청오류로 추정당한 적이 있어요.	
■ 각각의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다르다고요?	
■ 원산지증명서가 조금 다른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 어떻게 하면 협정관세 적용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IV.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	20
V. Q & A (질의응답) .....	27
VI. 알아두면 좋은 자료 .....	29
■ FTA 관련 문의처	
■ FTA 관련 기관 홈페이지	

## I. 이런 원산지증명서는 처음 봐요!

###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서식이 똑 같아요?



- 한·칠레 FTA 및 한·상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한·EFTA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도록 하고있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상공회의소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전의 C/O



한·EFTA FTA C/O

### 왜 송품장을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사용하죠?



-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작성요령 숙지, 발급절차 이행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동반하게 됩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업체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토록 함으로서 별도의 서류 작성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정형화된 C/O



송품장 방식 C/O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만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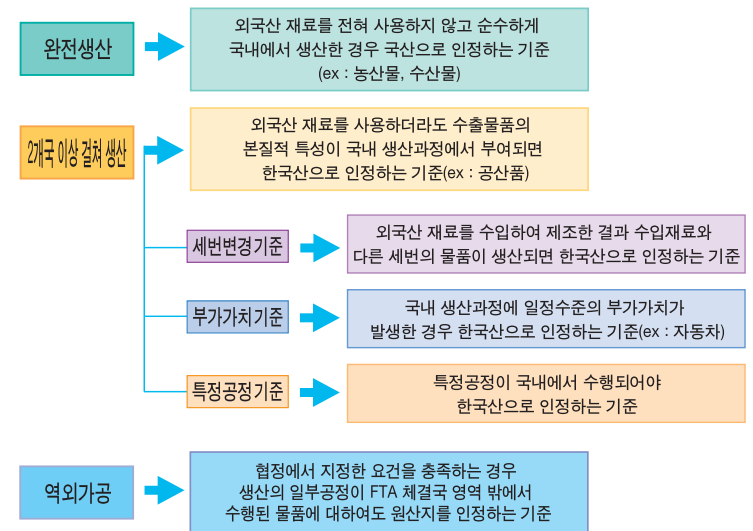
-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는 수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한·EFTA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송품장 등 무역서류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별도로 기재한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자신이 생산한 수출물품이 한·EFTA FT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국산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서는 않습니다.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어떻게 결정하지요?



- 한국산 물품이란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 생산되고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가공, 조립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EFTA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한·EFTA FTA 원산지규정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2]로 규정되어 있으며, 완전생산 물품,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 역외가공 물품 등을 원산지(한국산)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는 세번변경, 부가가치 및 특정공정 기준 충족물품이 있는데, 이 중 두가지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는 경우 송품장과 원산지증명서 모두 제출하나요?**



-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서류는 송품장 등 무역서류 본래의 성격 뿐 아니라 한·EFTA FTA 협정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 따라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건이 서류제출로 선별된 경우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 등 무역서류를 제출하면 유사한 내용의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원산지신고서 문안만이 기재된 별도의 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의 자격만을 갖고 있어 서류제출로 선별된 경우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다른 수입신고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



신고문안이 기재된 별도서류

**모든 물품에 간이 원산지증명서가 적용되나요?**



- 한·EFTA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EFTA 회원국산 물품에 대하여 간이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스위스산 치즈에 대해서는 수출자 스스로 작성·발급한 간이 원산지증명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스위스산 치즈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협정에서 별도로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위임한 기관에서 확인·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기관발급 C/O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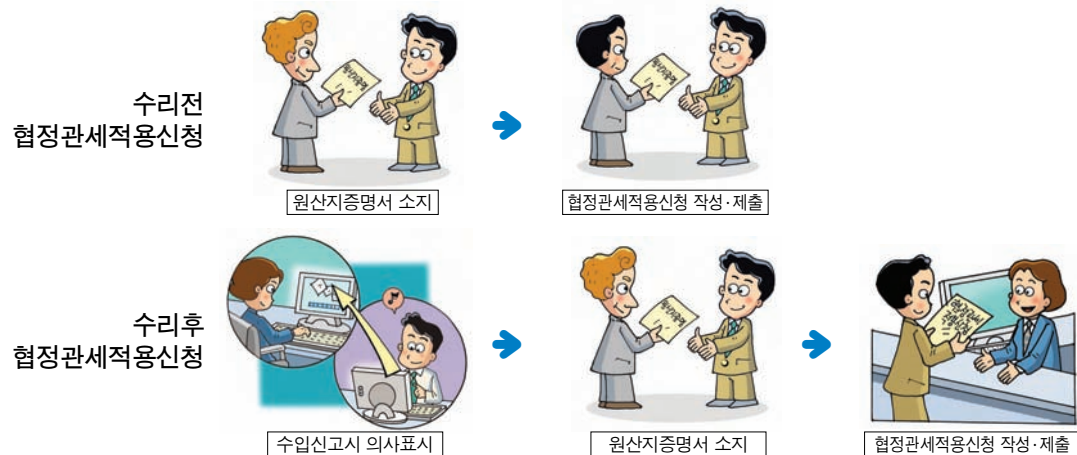
기관발급 C/O 요구

## II.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어요!

### 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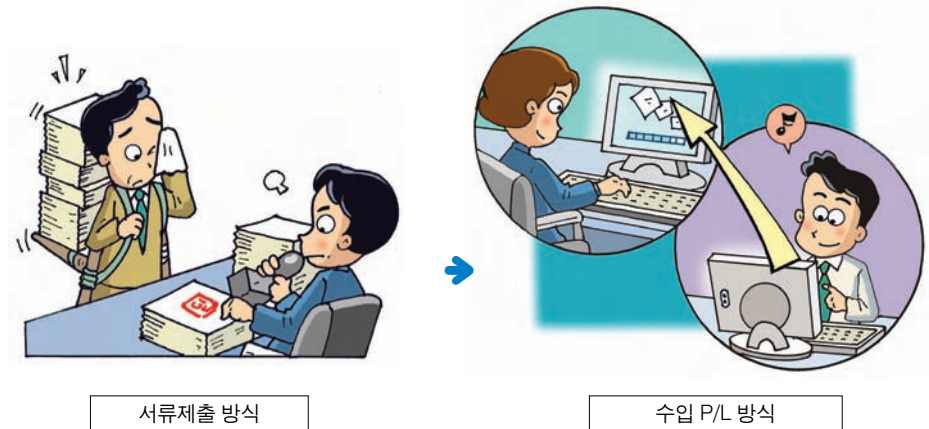
-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서류제출 대상이 아닌가요?



- 현행 서류제출 대상인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실태 분석, 업체 건의사항 및 FTA 확대 등을 감안하여 수입 P/L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명확화와 한·칠레 FTA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절차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규정한 통관단계에서의 경정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수리후 협정관세 신청품목(탄)을 협정관세율로 신고하고 경정하던 것이 수입신고시에 실행관세율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정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통관단계의 경정절차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첫째 통관단계의 경정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수입 P/L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 둘째 통관단계의 경정으로 인해 별도 고지건이 발생 하는것을 차단함으로써 별도고지건과 월별납부 건을 이중으로 관리하여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져 월별납부 업체의 납세 편의가 대폭 제고되며,
- 마지막으로 수리후 구비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모든 품목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신청 품목누락을 방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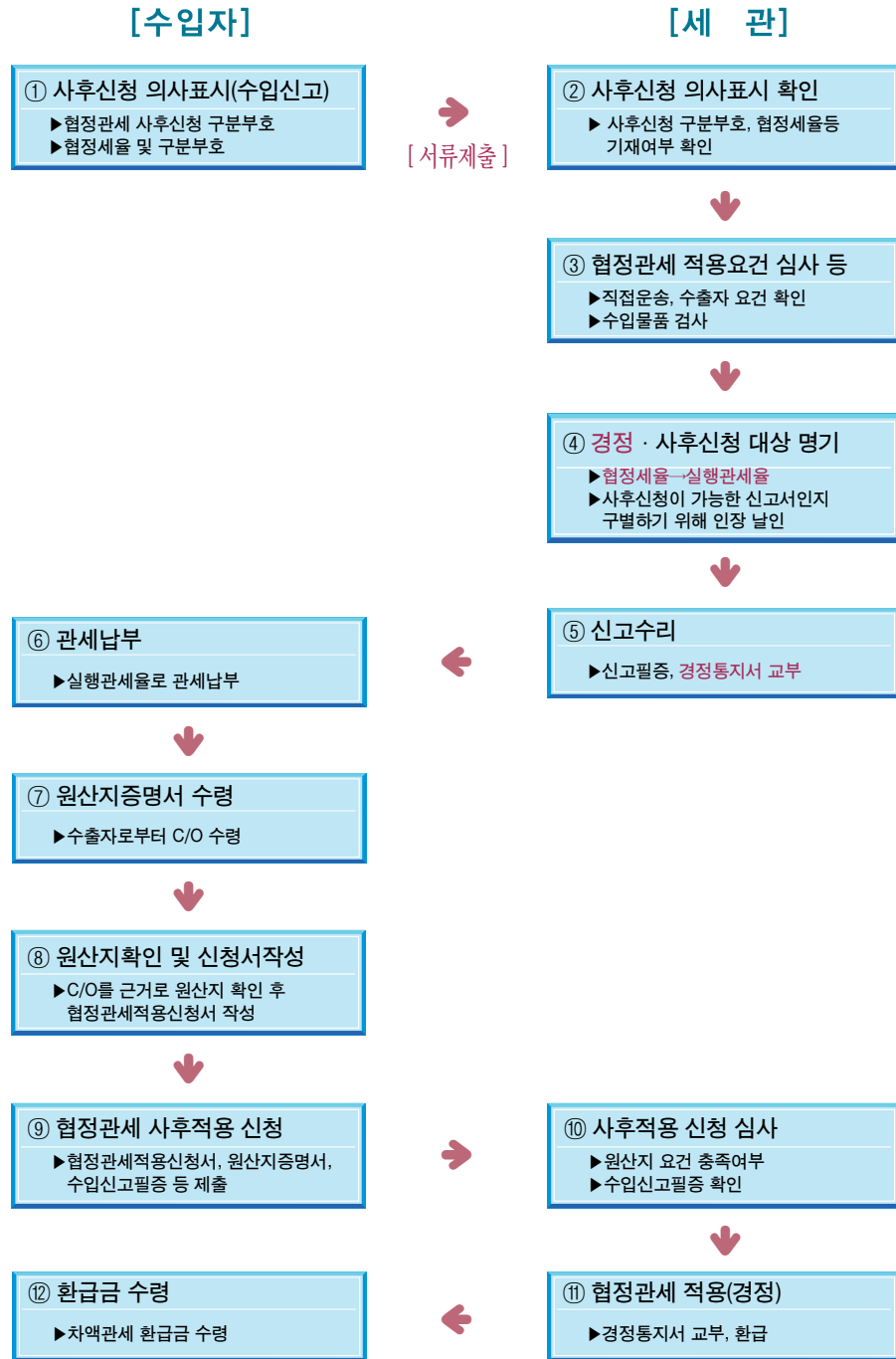
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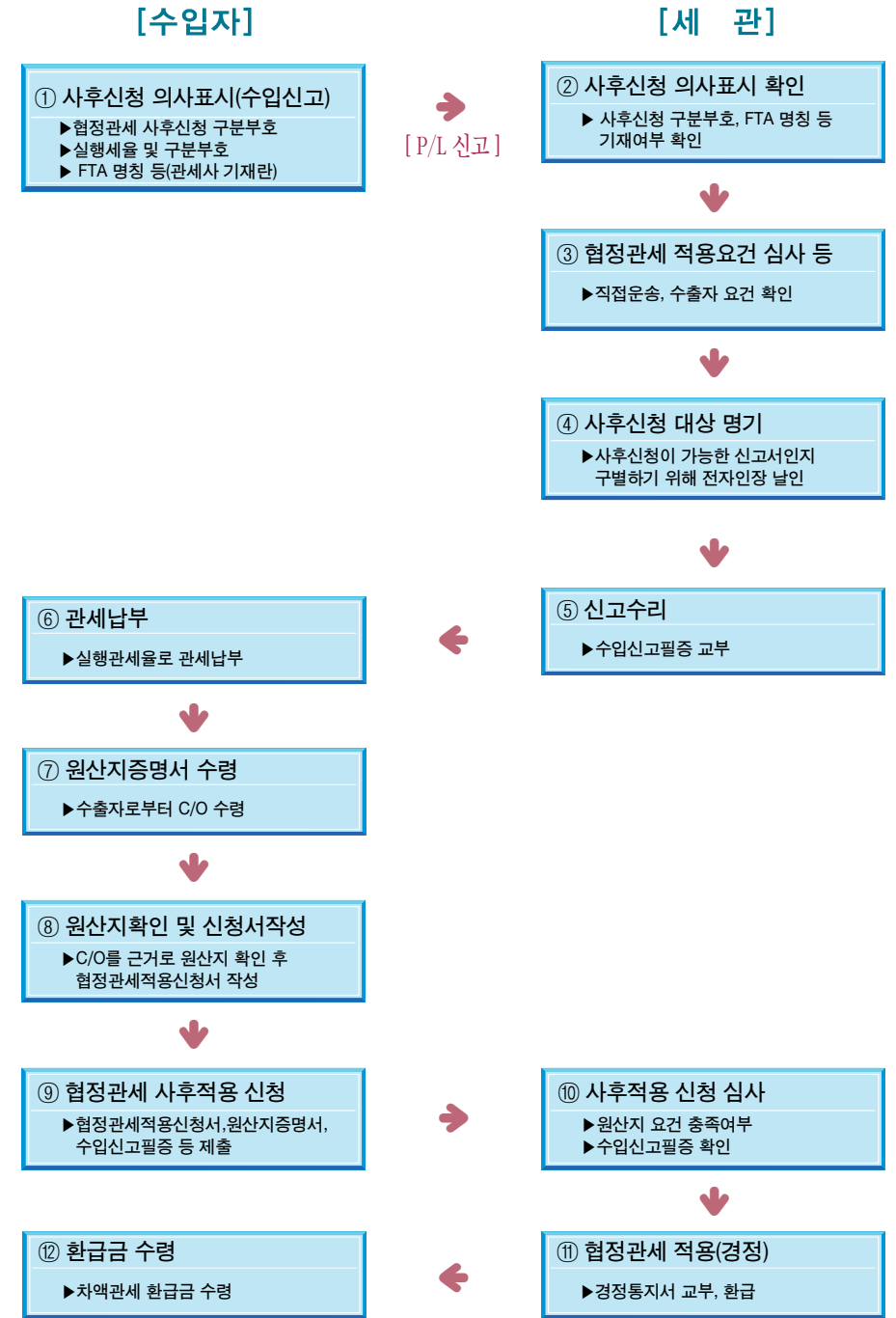
- 현행 절차는 서류제출로 신고한 후 협정관세율을 실행관세율로 경정하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가능 품목을 확정된 다음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절차는 관세율은 실행관세율로 하고, 관세사 기재란에 적용받고자 하는 FTA 명칭 등을 기재하여 P/L로 신고한 후 관세를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이때 P/L 도입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 인장은 수입신고서(수리필증)에 자동으로 날인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절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변경전)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변경후)





### III. 협정관세 적용오류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협정관세 신청오류로 추정당한 적이 있어요.



- FTA 발효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한 추징의 주된 원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해당 FTA 협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통상의 무역거래에서 제공받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FTA 발효 초기에는 특히 설명회 참석, 법령정보 검색, 안내책자 구독 등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세고객지원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증전의 무역거래



협정관세 신청오류



설명회 참석 등

#### 각각의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다르다고요?



-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작성·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항목은 협정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각각의 협정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그 개수 및 기재항목별 증명서상 위치 등이 협정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 따라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협정의 명칭만으로 어떤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협정에서 적용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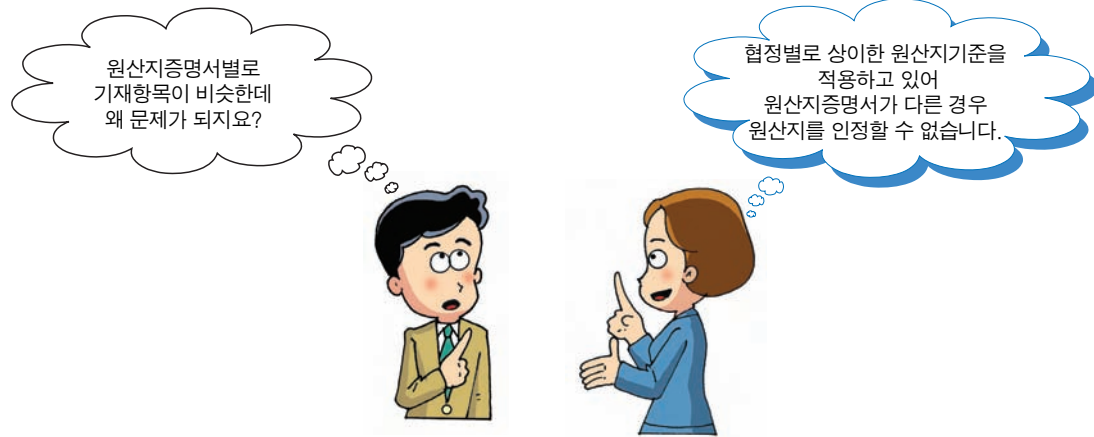


협정별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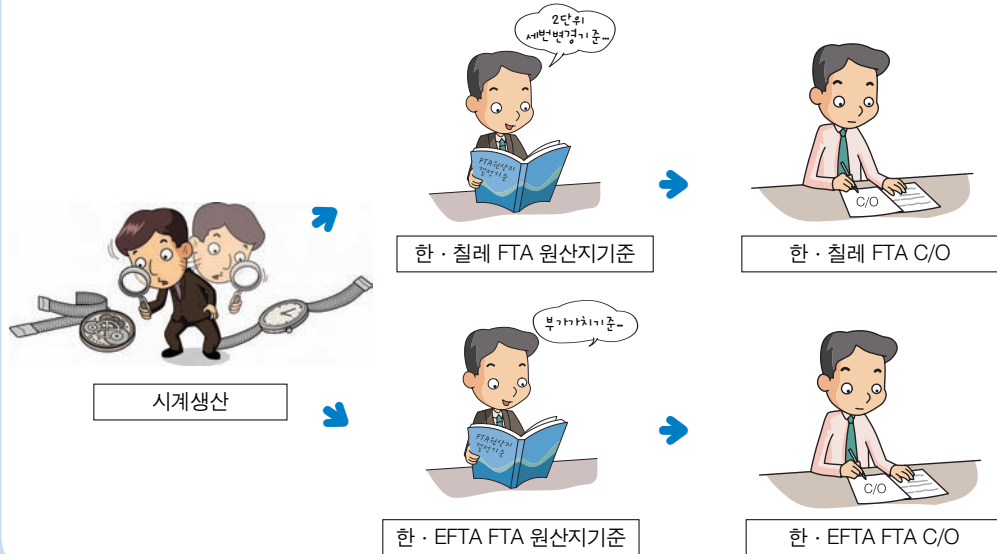


협정별 특혜신청

원산지증명서가 조금 다른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수출자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관련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또한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은 서로 상이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발급주체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한·칠레 FTA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TP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정관세 적용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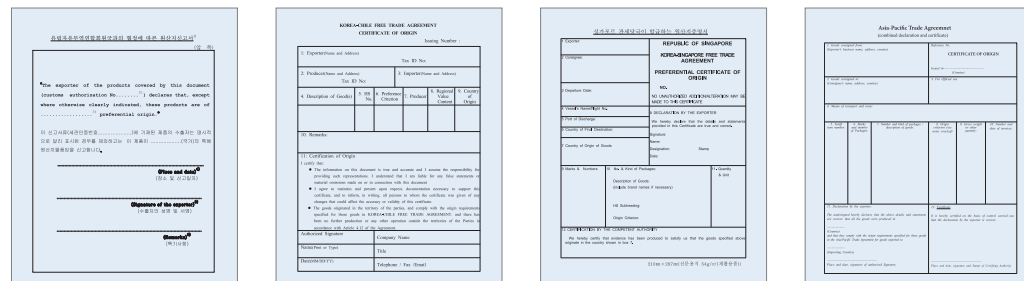
-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당해 물품의 생산국과 체결한 FTA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EFTA FTA의 관세철폐 품목 즉, 협정관세 적용품목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발행되는 선적서류 이외에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실제 생산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협정관세 배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IV.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 ▶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 원산지증명방식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과 수출국의 세관,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 우리나라는 각 협정에 따라 자율증명방식과 기관증명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한·칠레 FTA 및 한·EFTA FTA(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에서는 자율증명 방식을,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FTA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 원산지증명제도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확인하는 1차적인 절차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신청시 구비서류로 사용됩니다.
  - 한-EFTA FTA 원산지 증명서
  - 한-칠레 FTA 원산지 증명서
  -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증명서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
-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원산지증명서



##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 및 작성요령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sup>1)</sup>

(앞 쪽)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sup>2)</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3)</sup>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 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  
(Place and date)<sup>4)</sup>  
(장소 및 신고일자)

.....  
(Signature of the exporter)<sup>5)</sup>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  
(Remarks)<sup>6)</sup>  
(특기사항)

(뒷 쪽)

<b>작 성 요 령</b>	
1	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주 및 한글번역 문은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문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6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 세관인증번호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 단위의 부호를 기재합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4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장소 및 신고일자가 상업송장 등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성명 및 서명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6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다음의 문구를 “특기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예외)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 치즈  
원산지증명서

<b>Certificate of Authenticity</b>	
<b>1. Exporter (full name and address)</b> (수출자)	<b>CERTIFICATE for cheese designated as</b>  .....  (Code ..... of the 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Nr. ORIGINAL
<b>2. Consignee (full name and address)</b> (수하인)	<b>3. Authorized Organization</b> (증명기관)
Notes	<b>4.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b> (상업송장번호 및 발행일자)
<b>5. Marks and numbers - Number and nature of the packages</b> (포장의 표시 및 일련번호)	<b>6. Gross weight (kg)</b> (총중량)
	<b>7. Net weight (kg)</b> (순중량)
<b>8. Visa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b> (증명기관의 인증)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invoice contains the designated Swiss cheese in conformity to the description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Free Trade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위에서 언급된 상업송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스위스 치즈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b>Place and date:</b> <b>Signature:</b> <b>Seal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b> (발행일자 및 장소)                      (서명)                                      (증명기관 직인)	
<b>9. Reserved for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b> (대한민국 세관용)	

**한 · 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

1: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Name and Address)		3: Im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Producer	8. Regional Value Content	9. Country of Origin
10. Remarks:					
11: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li> <li>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li> <li>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li> </ul>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한 · 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b>REPUBLIC OF SINGAPORE</b>  <b>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b>  <b>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b>  <b>NO.</b>  NO UNAUTHORIZED ADDITIONAL/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	
2 Consignee: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b>8 DECLARATION BY THE EXPORTER</b>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Name:  Designation:                                  Stamp  Date:	
5 Port of Discharg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9 Marks & Numbers	10 No. & Kind of Packages:	11. Quantity & Unit
	Description of Goods: (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	
	HS Subheading:	
	Origin Criterion: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b>CERTIFICATE OF ORIGIN</b>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Issued in:.....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V. Q & A (질의응답)**

**Q1. 스위스산 시계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 전자식 시계(현행 8%) 및 시계의 핵심부품인 무브먼트(현행 5%)는 9월1일부터 0%로 인하되고,
- ⊙ 기계식 시계(현행 8%)는 9월1일부터 6.6%, 2007년 5.4%, 2008년 4.0%, 2009년 2.7%, 2010년 1.4%로 연차적으로 인하된 후 2011년부터는 0%가 적용됨

**Q2. 스위스산 스키에 대해 인하되는 관세율과 국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 A :** 스키채(스노보드 포함)는 현행 8%, 스키부츠 및 스키슈트는 현행 13%이며, 9월1일부터 모두 0%가 적용됨
- ⊙ 스위스 스키용품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뵈클(Voekl)’이며, 수입실적은 미미(2005년 285천불)하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로 인하여 수입증가 예상됨.
    - \* 현재 대부분의 스키용품은 이태리(브랜드: 노르디카) 및 스페인(브랜드: 로시놀) 등지에서 수입됨
  - ⊙ 일반 시중에서는 스위스 스키용품에 대해 관세가 없어질 경우 브랜드 간에 가격경쟁이 발생하여 이태리, 스페인 등 여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스키용품의 가격도 덩달아서 인하될 것으로 예상

### Q3. 의약품의 현행 관세율과 인하되는 관세율은?

**A** : 의약품은 대부분 3~7년간 연차적으로 관세가 인하됨

- ☉ 페니실린·항암제·비타민제 등은 3년간 연차적으로 인하되며, 뇌하수체호르몬제는 5년간에 걸쳐 인하됨

**3년인하** 현행 8% → '06.9.1(6.0) → '07(4.0) → '08(2.0) → '09(0)

**5년인하** 현행 8% → '06.9.1(6.6) → '07(5.4) → '08(4.0) → '09(2.7)  
→ '10(1.4) → '11(0)

- ☉ 스위스는 노바티스(세계 21위), 로체홀딩(세계 29위) 등 세계적인 의약품 메이커가 포진하고 있어, 상당한 수입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Q4.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생수도 관세가 없어나요?

**A** : 스위스·노르웨이 등 EFTA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생수도 9월 1일부터 현행 8%의 관세율이 0%로 인하됨

\* 2005년 기준 스위스 생수 수입실적 없음

### Q5. 한·EFTA FTA 발효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관세가 줄어드나요?

**A** : 연간 약 340억원의 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VI. 알아두면 좋은 자료

### FTA 문의처

- ❖ 협상 관련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02) 2100-8110
- ❖ 법령 관련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 02) 503-9239
- ❖ 통관 관련 : 관세청 공정무역과 ☎ 042) 481-7642~3  
관세고객지원센터 ☎ 1577-8577

### FTA 관련기관 홈페이지

-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
  - 협상 등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게재
    - ☞ 협상 등 추진현황(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 협정문(조약정보) : [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0/mk\\_c056/mk\\_d154/mk05\\_02\\_sub06\\_01.jsp](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0/mk_c056/mk_d154/mk05_02_sub06_01.jsp)
- ❖ FTA 관세특례법령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재
  -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FTA 관세특례법령 게재
    - ☞ 법령(법령정보) [http://www.mofe.go.kr/law/law\\_00.php?tname=EC0102](http://www.mofe.go.kr/law/law_00.php?tname=EC0102)
- ❖ FTA 관세특례고시 및 주요 질의·답변
  -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
  - FTA 관세특례고시, 통관절차 등 web-book 및 주요 질의·답변
    - ☞ <http://www.customs.go.kr/hp/homepage/>



이런 것은 꼭 알아두세요!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numerous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solid black horizontal line is positioned near the bottom of this area.